

국민연금공단 IT 전문위원 모집 공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IT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예정인원: 2명(전산직 전문위원)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수행업무
IT R&D (기술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기획 및 실행) AI, Robot, IoT, BigData, Cloud 등 ICT 신기술 분야 R&D 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ICT R&D센터 관리• (신기술 융합) IT신기술 적용 적합과제 선정·업무융합 방안 마련, IT신기술 추세분석 및 대내외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신기술 검증) IT신기술 사전 PoC, BMT 등 안정성, 기술성 검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RPA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인 만60세 이상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붙임 1**
 - 공단이 인정한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인정 전산 자격증>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통신기사 ▪ 정보보안기사 ▪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경력요건(공고일 기준)**

구분	세부 경력사항
전문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전문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실무경력: 공공 및 민간기업 ICT 분야 기술 전략, 기술기획 업무

3. 근로조건

분야	주요 내용
고용형태	• 전문위원(전산직)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 시점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복무 관련 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근 무 지	• 공단 본부 디지털혁신본부 내(전주 혁신도시 소재)
보수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500~8,500만원 내외 * 경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 결정(중식비,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지급)

4. 지원서 접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0. 9. 8.(화) ~ 9. 25(금) 18:00까지
접수방법	<p>인터넷으로만 접수</p> <p>※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신청받지 않으며, <u>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u></p>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등 제출서류 인터넷 작성

5.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단계	전형 방법 및 일정	비고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2020.10.16.(금) 	홈페이지 발표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2020.10.20.(화) ~ 10.22.(목) • 장소: 공단 본부(전주) 	
최종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2020.10.29.(목) 	홈페이지 발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1.2.(월) <예정> 	

※ 전형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5배수 미만 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우대사항(공고일 기준)

구분	인정대상	적용단계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분야 관련 우대사항	ICT R&D 분야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터 업무 경험자	서류전형
	정부 R&D 과제 PL 이상 경력자	
	수행업무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모두 해당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7. 유의사항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등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접수마감 시간(2020. 9. 25. 18:00)까지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 및 증빙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지원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부적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운영하되, 유효기간 이전에 동일한 분야의 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사혁신실 채용담당자(063-713-529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8.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